



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 (방문요양.목욕.간호)

○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단위:원

구 분	금액(원)	본인일부부담금(15%)	구 분	금액(원)	본인일부부담금(15%)
30분	16,190	2,429	150분	46,970	7,046
60분	23,480	3,522	180분	52,880	7,932
90분	31,650	4,748	210분	58,930	8,840
120분	40,280	6,042	240분	65,000	9,750

○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 액 (원)	본인일부부담금(15%)
차량이용(차량내)	82,160	12,324
차량이용(가정내)	74,070	11,111
차량미이용	46,250	6,938

○방문간호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 액 (원)	본인일부부담금 (15%)
30분 미만	39,440	5,916
30분이상~60분미만	49,460	7,419
60분 이상	59,500	8,925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(방문요양1~2등급 4시간, 3~5등급 3시간 기준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한도액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
방문요양 가능시간	29일*4시간	26일*4시간	26일*3시간	24일*3시간	21일*3시간
본인부담금(15%)	282,750	253,500	206,232	190,368	166,572
본인부담금(9%)	169,650	152,100	123,739	114,220	99,943
본인부담금(6%)	113,100	101,400	82,492	76,147	66,628

*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(위원장:보건복지부 차관)이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 보험료 순위 25%초과~보험료 순위 50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	9%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(이하 “보험료액”이라 한다)이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 보험료 순위가 0~25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	6%
기초수급권자	0%

※ 본 자료는 정보(수치)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료의 사용에 있어서 작성자는 법률적, 도의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.